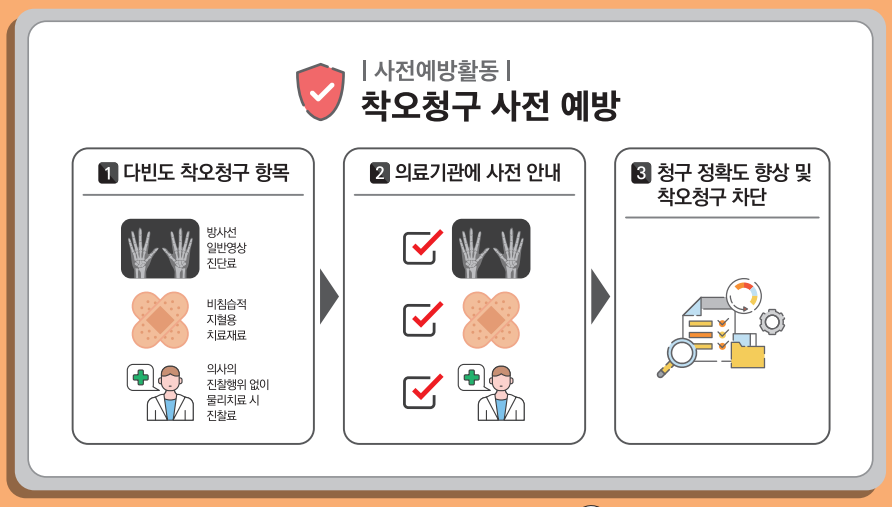
## 의료계와 함께하는

# 2026년
# 사전예방활동 사업

의료계와 함께 만드는 올바른 청구 문화
건강보험의 내일을 지켜 나갑니다.






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
건강보험심사평가원 HEALTH INSURANCE REVIEW & ASSESSMENT SERVICE
KMA 대한의사협회 KOREAN MEDICAL ASSOCIATION
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 Korean Hospital Association

# 사전예방활동 사업이란?

- 「**사전예방활동 사업**」은 **착오청구가 다발생하는 항목**에 대해 의약단체와 함께 **'사전예방활동**(교육·홍보)'을 **실시**하고, **요양기관**이 **스스로 점검**하여 **청구행태**를 **개선**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- 사업을 인지한 **요양기관은 대상항목이 요양급여비용 급여기준에 맞게 청구되었는지, 실제 실시한 행위와 청구내역이 일치하는지** 등을 자체적으로 **확인**하고 **청구행태**를 **개선**합니다.

## 사전예방활동 사업 절차

대상항목의 **청구기준 및 청구현황 분석자료를** 심평원이 **의약단체에 제공**하면, **의약단체**가 **요양기관**을 **교육·홍보**합니다. 이를 통해 **요양기관**은 **자율적으로 청구행태**를 **점검·개선**합니다.

| 항목선정 | 정보제공 | 사전예방활동 | 모니터링·환류 |
|---|---|---|---|
| 다기관·다발생 착오청구 항목 발굴, '사전예방활동운영협의체'에서 대상항목 선정 | 대상항목 분석자료를 의약단체(중앙시·도 및 관련 학회)에 제공 | 의약단체는 제공된 정보를 이용하여 교육·홍보 활동 실시 | 활동 전·후 개선여부 확인, 개선방안 마련 및 사후관리 방향 결정 |

## 2026년 대상항목

### 1. 방사선 일반영상 진단료(수·족·슬관절)

- 수·족·슬관절 양측을 동시에 1장의 영상으로 1매 촬영 후, 2매로 착오 청구

### 2. 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

- 급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행위에 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 청구

## 사업기간

**2026년 2월부터 12월까지**

※ 이후 **항목 모니터링** 시행, 모니터링 결과는 **환류 및 사후관리 방향 설정**에 반영됩니다.

2026년 대상항목

# 1. 방사선 일반영상 진단료(수·족·슬관절)

수·족·슬관절 등 양측 동시 촬영은 실제 촬영 매수와 청구 매수가 일치하지 않아 착오청구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목입니다. 양측 부위를 **영상 1장에 담아 촬영했을 경우, 반드시 실제 영상 수에 맞춰 '1매×1회'로 청구**해야 착오청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

## 올바른청구

수·족·슬관절 등을 **양측** 동시에 **1장의 영상**으로 **1매** 촬영한 경우
→ 영상 매수에 맞춰 **1매 1회 청구**



실제촬영

| 올바른 청구 |
| --- |
| G6501 수골 1매 × 1회 |

## 착오 청구 유형

- 수·족·슬관절 등 양측을 동시에 1장의 영상으로 1매 촬영 후 매수 착오청구

## 착오 청구 사례

- 양손을 동시에 1장의 영상으로 1매 촬영 후 → 2매 또는 2회로 청구



| 착오 청구 | 올바른 청구 |
| --- | --- |
| G6502 수골 2매 × 1회<br>G6501 수골 1매 × 2회 | G6501 수골 1매 × 1회 |

**관련 근거**
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7조(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)「의료법」 제22조(진료기록부 등) 제1항 등에 의거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는 요양기관에 내원한 수진자에 대하여 실제 진료한 내역을 기록한 진료기록부 등에 의하여 정확히 청구하여야 함

# FAQ | 자주하는 질문



## Q1 양손을 한 장에 촬영하면 2회 청구하면 되나요?



촬영영상 예시

› **양손을 한 번에 촬영**하여 **1장의 영상**이 나오는 경우, **'1매 × 1회'**로 청구합니다.

| 올바른 청구 | • G6501 수골 **1매 × 1회** |
|---|---|
| 착오청구 예시 | • G6502 수골 2매 × 1회<br>• G6501 수골 1매 × 2회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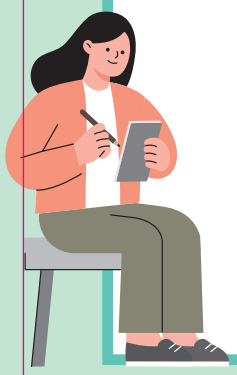
## Q2 양손을 한 장에 다른 방향(PA, Lateral view)으로 2번 촬영한 경우, 어떻게 청구하나요?



촬영영상 예시

› **양손**을 서로 다른 촬영 방향으로 2번 촬영하여 **2장의 영상**이 나온 경우는 **'2매 × 1회'**로 청구합니다.

| 올바른 청구 | • G6502 수골 **2매 × 1회** |
|---|---|
| 착오청구 예시 | • G6501 수골 1매 × 4회<br>• G6504 수골 4매 × 1회<br>• G6502 수골 2매 × 2회 |





방사선 일반영상 진단료 청구

# 자가 확인사항

수·족골 등 **양측을 동시에 1장의 영상으로 1매 촬영한 경우 올바른 청구방법**


실제촬영

**올바른 청구**

G6501 수골 1매 × 1회

※ ‘G6502 수골 **2매 × 1회**’, ‘G6501 수골 **1매 × 2회**’는 **착오청구**에 해당합니다.

* 아래의 6항목 모두 “Y”인 경우 올바른 청구에 해당합니다.

| 분류 | 연번 | 점검사항 | 확인 |
|---|---|---|---|
| 영상 촬영방식 확인 | 1 | 동일 필름 면에 촬영 가능한 부위인가? | |
| | 2 | 양측을 한 장의 영상으로 찍었는가? | |
| 영상 촬영 매수 일치 여부 확인 | 3 | PACS(영상저장시스템)에서 실제 촬영한 영상 매수(1매)를 확인했는가? | |
| | 4 | PACS 및 진료기록부에 기록된 촬영 매수(1매)와 청구 매수(1매)가 일치하는가? | |
| | 5 | 실제 영상 매수(1매)에 맞는 수가코드를 선택했는가?<br>※ 5단코드 마지막자리 확인 | |
| 청구내역 재확인 | 6 | 양측을 한 장의 영상으로 1매 촬영했는데, 1매로 정확히 청구하였는가? | |

| 분류번호 | 코드 | 분류 |
|---|---|---|
| 다-XXX | | 〈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〉<br>○○ 부위 |
| | GXXX1 | 가. 1매 |
| | GXXX2 | 나. 2매 |
| | GXXX3 | 다. 3매 |
| | GXXX4 | 라. 4매 |
| | GXXX5 | 마. 5매 또는 그 이상 |

※ 본 확인사항은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점검하여 착오청구를 예방하기 위한 참고자료입니다.

## 방사선 일반영상 진단료 청구 사전예방활동 포스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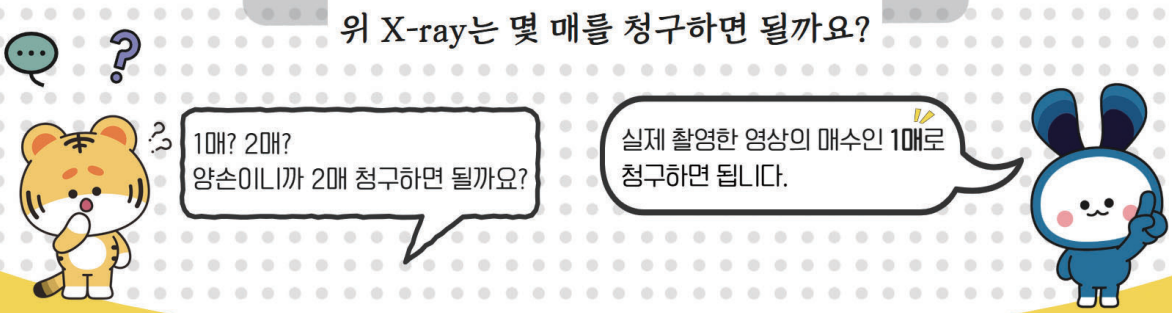
착오청구가 많은 항목을 의료기관 스스로 점검 후 개선하는 사업

# 의료계와 함께하는 사전예방활동 사업

## – 방사선 일반영상 진단료 –



위 X-ray는 몇 매를 청구하면 될까요?




**실제 촬영한 영상의 매수**를 **청구**하셔야 합니다.

오른손, 왼손을 **1장의 영상에 동시 촬영**하였으므로, **수골 "1매 x 1회"로 청구**하면 됩니다.

(잘못된 청구: 수골 "1매x2회", 수골 "2매x1회")

사업 관련 문의: 대한의사협회(☎02-6350-6571, 6581), 대한병원협회(☎02-705-9257)
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운영실 자율점검부(☎033-739-5944, 5942, 5945)

보건복지부 |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EALTH INSURANCE REVIEW & ASSESSMENT SERVICE | KMA 대한의사협회 KOREAN MEDICAL ASSOCIATION |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 Korean Hospital Association

2026년 대상항목

# 2. 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

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는 **급여대상**에 **해당하는 경우**에 한하여 요양급여로 청구하는 항목입니다. 청구 전 **사용목적(지혈 목적)**과 **적용 부위(천자부위)**, **인정개수**를 **한 번 더 확인**하면 올바르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## 올바른청구

**급여대상에 해당**하는 **중재 후** 지혈을 위해 **급여대상**(가 또는 나)에 **맞게 청구**한 경우

- **대퇴**를 통한 **관상동맥조영술** 이후 **지혈에 사용** ⟫ **'가' 대퇴(기기형, 밴드형) 청구**
- **동맥혈 채혈검사** 후 **지혈에 사용** ⟫ **'나' 밴드형, 반창고형 청구**

## 착오 청구 유형

- 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이외 청구

## 착오 청구 사례

- 정맥주사 부위에 지혈 목적으로 사용 후 → 비급여 대상임에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

**관련 근거**

□ 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 급여기준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48호, 2021.7.1.시행)

기기 등을 이용해 천자부위를 지혈하는 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하며,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%로 적용함. 다만, 급여대상 이외 사용하는 경우 비급여 하되, 이때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함.

- 다 음 -

1. 급여대상
   가. 대퇴(기기형, 밴드형), 요골(기기형, 밴드형), 패드형
      1) 혈관 중재적 시술 또는 혈관조영 촬영 후 동맥 천자 부위 지혈에 사용한 경우
      2) '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-침습적 지혈기구'를 동시 사용한 경우라도 1종만 인정함
   나. 밴드형, 반창고형
   혈액 투석 후, 동맥혈 채혈검사 및 동맥도관 제거 후 지혈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
2. 인정개수: 동일 천자 부위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는 1개만 인정
3. 상기1. 급여대상간의 교차사용은 인정하지 아니함

# FAQ | 자주하는 질문



## Q1 '대퇴·요골(기기형,밴드형)' 및 '패드형' 치료재료는 어떤 경우에 요양급여로 청구할 수 있나요?

해당 치료재료는 **혈관 중재적 시술** 또는 **혈관 조영 촬영 후 동맥천자 부위 지혈**에 사용하는 경우 **요양급여(선별급여 80%) 가능**합니다.

* 예시(관상동맥조영술 후 동맥 지혈에 사용하는 경우)

| 치료재료 | 관련행위 | ▶ | 올바른 청구 |
|---|---|---|---|
| 요골기기형 | 관상동맥조영(HA670) 후 요골부위 지혈 시 | | (B항) 선별급여 80% |

* 예시(단순처치 후 출혈부위 지혈에 사용하는 경우)

| 치료재료 | 관련행위 | ▶ | 올바른 청구 |
|---|---|---|---|
| 요골기기형 | 단순처치[1일당](M0111) 후 지혈 시 | | 비급여 |

## Q2 '밴드형' 및 '반창고형' 치료재료는 어떤 경우에 요양급여로 청구할 수 있나요?

해당 치료재료는 **혈액 투석 후, 동맥혈 채혈검사 및 동맥도관 제거 후 지혈**에 사용하는 경우 **요양급여(선별급여 80%) 가능**합니다.

* 예시(혈액투석 후 동정맥루 지혈에 사용하는 경우)

| 치료재료 | 관련행위 | ▶ | 올바른 청구 |
|---|---|---|---|
| 반창고형 | 혈액투석(O7020) 후 지혈 시 | | (B항) 선별급여 80% |

* 예시(정맥주사 후 정맥부위 지혈에 사용하는 경우)

| 치료재료 | 관련행위 | ▶ | 올바른 청구 |
|---|---|---|---|
| 반창고형 | 정맥내 점적주사(KK052) 후 정맥부위 지혈 시 | | 비급여 |

## Q3 동일 천자부위에 '패드형'과 '대퇴(기기형)' 2개 사용 가능한가요?

**아니요. 동일 천자부위**에 1개만 인정 가능하므로 **'대퇴(기기형)' 또는 '패드형' 1개만 인정 가능**합니다.



## Q4 요골동맥 천자를 시행하다 진행이 어려워 대퇴동맥으로 혈관조영술을 시행하였을 경우 부위별로 치료재료를 각각 청구할 수 있나요?

**네, 가능합니다.** 요골동맥과 대퇴동맥은 **동일 천자부위가 아니므로** 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 **각각 1개씩 인정**됩니다.



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 청구

# 자가 확인사항



**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 급여기준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48호, 2021.7.1.시행)**

기기 등을 이용해 천자부위를 지혈하는 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하며,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%로 적용함. 다만, 급여대상 이외 사용하는 경우 비급여 하되, 이때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함.

- 다 음 -

1. 급여대상
   가. 대퇴(기기형, 밴드형), 요골(기기형, 밴드형), 패드형
      1) 혈관 중재적 시술 또는 혈관조영 촬영 후 동맥 천자 부위 지혈에 사용한 경우
      2) '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-침습적 지혈기구'를 동시 사용한 경우라도 1종만 인정함
   나. 밴드형, 반창고형
   혈액 투석 후, 동맥혈 채혈검사 및 동맥도관 제거 후 지혈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
2. 인정개수: 동일 천자 부위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는 1개만 인정
3. 상기1. 급여대상간의 교차사용은 인정하지 아니함

## [가. 대퇴·요골(기기형, 밴드형), 패드형 치료재료 청구 시]

* 아래 항목 모두 "Y"인 경우 올바른 청구에 해당합니다.

| 분류 | 점검사항 | 확인 |
|---|---|---|
| 급여대상 확인 | 적용하고자 하는 부위 및 목적이 아래에 해당하는가?<br>① 혈관 중재적 시술 후 동맥천자부위 지혈<br>② 혈관조영 촬영 후 동맥천자부위 지혈 | |
| 청구개수 확인 | 동일 천자부위에 1개의 치료재료만 청구하였는가? | |

## [나. 밴드형, 반창고형 치료재료 청구 시]

* 아래 항목 모두 "Y"인 경우 올바른 청구에 해당합니다.

| 분류 | 점검사항 | 확인 |
|---|---|---|
| 급여대상 확인 | 적용하고자 하는 부위 및 목적이 아래에 해당하는가?<br>① 혈액투석 후 지혈<br>② 동맥혈 채혈검사 후 지혈<br>③ 동맥도관 제거 후 지혈 | |
| 청구개수 확인 | 동일 천자부위에 1개의 치료재료만 청구하였는가? | |

※ 본 확인사항은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점검하여 착오청구를 예방하기 위한 참고자료입니다.

## 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 청구 사전예방활동 포스터

착오청구가 많은 항목을 의료기관 스스로 점검 후 개선하는 사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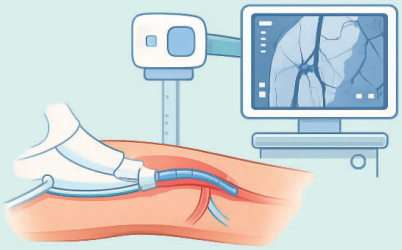
☆☆☆☆☆

### 의료계와 함께하는 사전예방활동 사업

# 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 급여기준 다시 알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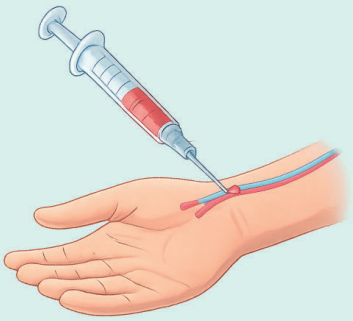
## 가. 대퇴·요골(기기형,밴드형), 패드형

- ☑ 혈관 중재적 시술 또는
- ☑ 혈관조영 촬영 후
- **동맥** 천자 부위 지혈에 사용



## 나. 밴드형, 반창고형

- ☑ 혈액투석 후,
- ☑ **동맥**혈 채혈검사 및
- ☑ **동맥**도관 제거 후 지혈에 사용



## 급여 산정 시 유의사항

- ☑ 동일 천자 부위 1개만 인정

사업 관련 문의: 대한의사협회(☎02-6350-6571, 6581), 대한병원협회(☎02-705-9257)
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운영실 자율점검부(☎033-739-5944, 5942, 5945)

보건복지부 |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EALTH INSURANCE REVIEW & ASSESSMENT SERVICE | KMA 대한의사협회 KOREAN MEDICAL ASSOCIATION |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 Korean Hospital Association

2025년 사전예방활동 시범사업

# 의사의 진찰행위 없이 물리치료 시 진찰료 (AA222) 산정기준

※ (사업기간) 2024년 11월 ~ 2025년 4월, 현재 항목 청구경향 지속 모니터링 중

## 올바른청구

물리치료를 일시에 처방하여, 이후 내원시 의사 진찰행위 없이 물리치료 실시
→ 의사 진찰행위 없이 물리치료 시 진찰료(AA222) 49.09점 산정

## 착오 청구 유형

- 물리치료를 일시에 처방하여, 이후 내원시 의사 진찰행위 없이 물리치료 실시
  → 의원기준 재진진찰료 139.85점 산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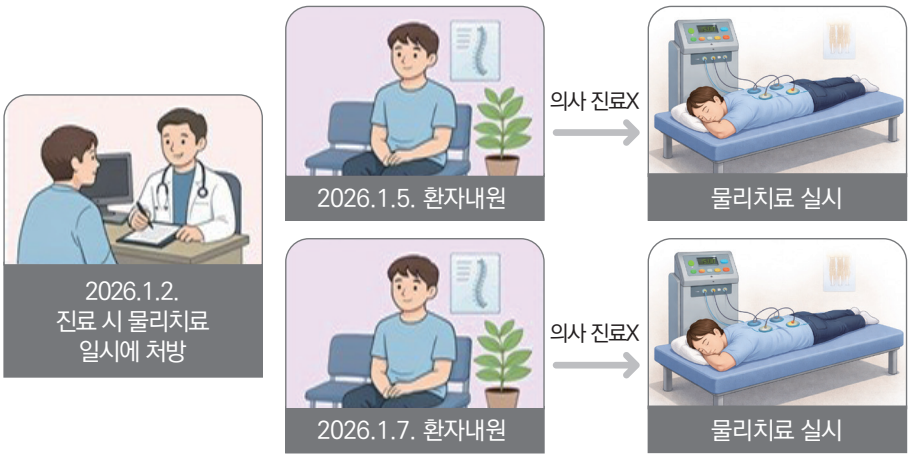
**관련 근거**

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편제2부 제1장 가-1(나)재진진찰료 주6.
물리치료 등을 일시에 처방 지시하여 의사의 진찰행위 없이 매일 또는 반복 내원하여 물리치료 등을 시술받은 경우에는 49.09점을 산정한다.

의사 진료행위 후 물리치료 시 진찰료-**재진진찰료 산정(의원기준 AA254)**




(물리치료를 일시에 처방 지시하여) 의사 진료행위 없이 물리치료 시 진찰료-**AA222 산정**



## 사전예방활동 한눈에보기

### 왜?

의료계와 협력하여 착오 청구를 예방하고 사전예방 중심의 적정 청구 체계를 강화

### 무엇을?

착오 청구가 자주 발생하는 항목을 중심으로 기준·사례를 쉽게 안내

### 어떻게?

항목선정 → 정보제공 → 교육·홍보 → 청구형태 확인·개선 → 모니터링·환류

### 기대효과

요양기관이 스스로 확인·점검하여 착오 청구를 예방하고 올바른 청구 문화를 정착

## 사전예방활동 더 자세한 내용은?

요양기관업무포털 **https://biz.hira.or.kr** ➔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➔ 기타 ➔ 공지사항 ➔ '사전예방활동' 검색

**안내 및 문의**

- **대한의사협회** | 02-6350-6571, 6581
- **대한병원협회** | 02-705-9257
- **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운영실 자율점검부** | 033-739-5942, 5944, 5945

발행처 | 건강보험심사평가원
HEALTH INSURANCE REVIEW & ASSESSMENT SERVICE
조사운영실 자율점검부